

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

국무총리 지시 제

19 호

(70-2012) 1,73. 11. 17.

수신 :

제목 :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리대책 보완지시

1. 국무총리 지시 제 18 호(1972. 10. 20) 및 제 11호
(1973. 5. 23)와 관련됩니다.

2.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리대책에 관한 지시를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관계기관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시의 주식매각조건 등

한국수산개발공사 주식매각에 있어 기시달된 지시 제 18 호
제 4 항의 주식매각조건과 금융기관 차입금 인수조건은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것.

2. 원화대출 전환분에 대한 지불보증 및 보증료

차관취득 유예분의 원화대출 전환분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되,

이 지불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는 거치기간중에는 전액 면제하고 상환기간중에는 보증잔액에 대하여 년 0.25%를 적용할것.

3. 보유선박의 매각

가. 한국수산개발공사의 보유선박중 비경제성 선박으로 매각하여야 할 선박의 범위는 1973년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결정한 27척을 포함하여 30척으로 할것.

나. "가" 항의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일시불로 매각하거나 또는 1972년말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연불조건으로 매각할수 있으며, 매각된 선박은 매수자가 자유로히 운용 또는 처분할수 있도록 할것.

다. "가" 항의 선박을 연불조건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매 계약체결 직후 동 선박대금의 상환계획을 관계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선박대금은 관계금융기관을 통하여 상환토록 할것.

4.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 및 보증

가. 한국수산개발공사의 대외차관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고 보증 약정이 이미 대외결제가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국고 보증을 해제할것.

나. 관계금융기관은 한국수산개발공사 보유선박중 비경제성 선박의 매각을 위하여 매각대상선박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고, 담보해제분에 대하여는 제동수산주식회사, 제동산업주식회사 및 심상준 자연인의 연대보증을 받을 것.

다. 한국산업은행은 차관추심 유예분의 원화대출전환에 따른 지불보증에 필요한 담보는 잔존 담보만으로 충급하되, 한국수산개발공사가 현재 또는 장차 부담하게될 채무에 대하여 동사 주식 매수법인인 제동수산주식회사 및 제동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심상준 자연인의 연대보증을 받을 것.

5.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대한 정부지원의 범위

관계부처는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대하여 원양어선 건조등을 위한 자금지원 (외자도입, 외화대부 포함)과 국제규제수역 내의 어선출어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끝.

국 · 무 총 회

수신처 :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수산청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산업
은행총재, 한국외환은행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장